사용전검사 1 사용전검사 길라잡이입니다.

기유

신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, 검사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이용방법

| 신청방법 | 우편, 방문 | | |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·처리 | 총 14일 | 시·군·구 접수 | > | 시 · 군 · 구 처리 (14일) |
| 수수료 | >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 57조에 따른 수수료 가.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: 2만원 나. 500제곱미터 이상 1,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: 3만원 다. 1,000제곱미터 이상 3,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: 4만원 라. 3,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: 6만원 마. 재검사수수료: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터 | | | |
| 구비서류 | 방문신청의 경우 > 신청인(대표자)제출서류 신청서 1부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1부 | | | |
| 관련 법 • 제도 | 정보통신공사업법(제36조)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(제35조)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(7 | 데 10조 [별지27]) | | |